

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. 7. 6 선고 2015가단25015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대중친회

피고B

변론 종결2017. 6. 15.

판결 선고2017. 7. 6.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여주시 C 답 3220m²(이하 '이 사건 제1토지'라 한다)에 관하여 1994. 7. 4.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접수 제1164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'이 사건 이전등기'라 한다)의 말소등기절차를, D 전 913m²(이하 '이 사건 제2토지'라 한다)에 관하여 1994. 6. 2. 같은 지원 접수 제9699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(이하 '이 사건 보존등기'라 한다)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.

이 유

1.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

원고는 피고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이 사건 이전등기 및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이 사건 보존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고 있다.

그러나 민법 제276조 제1항에 의하면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.

을제1 내지 8호층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원고 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없는 E가 원고 종중의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고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고, 달리 반증이 없다.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해 원고 종중의 총회결의 없이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므로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채승원